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추승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추승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호진, 성중기, 송도호,
송아량, 우형찬, 이광호,
이승미, 이은주, 정진철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사용·수익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까지 운영자증명서에 등재하고 운영자증명서에 등재한 자에 한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으나, 조례 내에서 운영자 금지행위 규정시 적용되는 운영자의 범위와 달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·보완하여 시설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아울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제3조제6항의 조문을 수정하고, 일부 누락된 각 호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물 운영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비·보완(안 제9조제3항)
- 나. 조문 수정 및 각호 내용 추가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내용 중 “법원에서 성립된”을 “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 각 호를 아래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1.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9조제3항제4호 내용 중 “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”을 “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물 운영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생략)</p> <p>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<u>법원에서 성립된</u>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같음 하되,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 기간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 신 설 ></p>	<p>제3조(점용허가) 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법원 -----에서 화해가 성립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</u></p>
<p>제9조(행위의 금지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~3.(생략)</p> <p>4. <u>시설물을 운영자 또는 그 직계가족</u>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</p>	<p>제9조(행위의 금지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</u> ----- -----</p>